

제 1 장 일반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 다. 양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 라. 지식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리고
- 마.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제 1.3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준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 1.4 조

의무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비정부 기관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 1.5 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동 기본협정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세관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 7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관세·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 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 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시행중이고 그 후 수시로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 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 17.1 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된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헌법과 개정된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 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

원산지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제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제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해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영해 밖에 있는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해양지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